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76

발의연월일: 2024. 8. 1.

발 의 자:전현희·황운하·홍기원

복기왕 · 조인철 · 채현일

이광희 • 이정문 • 박정현

이재강 · 김영배 · 윤종군

의원(12인)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청탁을 받으며 디올백 등 금품을 수수한 사안과 관련하여 시민 단체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신고를 받았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통상의 절차대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전원위원회 위원들이이해충돌 관계에 있음에도 제척, 기피, 회피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의혹이 있음.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공직자 직무와의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으로부터 수수한 것이기에 공직자에게도 신고의무가 없다며 무혐의 종결 처분을 내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대통령 직무범위의 포괄성, 대통령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직무를 유기하였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있음.

이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뇌물죄, 배우자 김건희의 알선수재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 위반 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 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사건과 그 와 관련된 사건임(안 제2조).
-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원내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 라.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특별검사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함(안 제5조, 제23조).
- 마.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영장의 심사 및 발부와 관련하여 관할 법원장에게 전담법관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6조).
- 바.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2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10명 이내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7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7조).

- 사.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 등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 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 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기한 내 수사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다만, 그 기간으로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음 (안 제9조).
- 자.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전담재판부에서 신속히 하여야 하고, 집중심리를 하여야 함(안 제10조, 제18조).
- 차.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 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중 이 법에 관련된 죄를 범한 사람이 자수· 자백하거나, 수사의 새로운 단서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관련

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함(안 제20조).

- 타.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안 제21조).
- 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직무 상 비밀누설, 수사내용 공표,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에 부당하게 관여 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은 처벌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하. 제2조제2호와 관련한 범죄와 그로 인하여 얻은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부패범죄와 부패재산으로 보며,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동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형법」 제49조 단서를 준용함(안 제25조).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 1. 2023년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무혐의 종결처분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의혹사건
    -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원위원회 구성원들의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에 따른 제척·회피·기피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 다는 의혹 사건
    -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상의 절차에 따른 모든 조사과정을 수행 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유기하였거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

건희에 대해서만 봐주기 조사를 하여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의 혹사건

- 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4월 총선을 의식하여 사건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였다는 의혹사건
- 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그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형법」상 뇌물 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사건
- 3.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 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①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특별검사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

- 음 각 호와 같다.
-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공소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한다)
-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공판기록, 수사기록, 감사기록 및 증거 등 관련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0명 이내, 파견검사 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및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특별검사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의 심사 및 발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의 관할 법원장에게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5의 전담법관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⑧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 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70명

-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각각 준용한다.
-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 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과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제4항,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며, 그 사유를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의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

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제18조의 관할 전담재판부에서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 ③ 법원은 제1항 사건의 심리를 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67 조의2에 따라 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

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 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

- 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 2.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 3.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4.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7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재판관할 및 전담재판부)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로 한다.
  - ②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로 하여금 전담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 제19조(이의신청) ① 제2조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

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형의 감면 등) ① 제2조 각 호와 관련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제9 조의 수사기간 중 특별검사에 자수하거나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 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수사의 새로운 단서 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③ 공무원은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특별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제21조(참고인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서 또는 자료 제공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③ 특별검사는 수사에 중요한 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

- 출한 참고인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2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3조(벌칙)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한 공무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2.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
  - 3.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나 직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
-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 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① 제2조제2호와 관련한 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도 불구

하고 부패범죄로 보며, 그로 인하여 얻은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은 같은 조 제2호의 부패재산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형법」 제49조 단서를 준 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6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